

정유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감 건의

- 대한석유협회 -

국방부가 통보한 정유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현 국내의 석유공급실정을 고려해 볼 때, 원활한 석유수급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현재 한전, 수협, 각종 공사나 국·공립대학 등에 석유를 공급하는 자는 국내 정유사인 바, 이들 정유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된다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이들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정유사 이외의 업체가 동 기간의 석유공급을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저장이나 수송능력 면에서 정유사 대비 열악한 시설을 보유한 이들 업체가 동 기간의 공급을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 상대인 정유사의 참여제한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일본의 경우를 예로 하더라도, 일본 방위청은 항공유 담합사건으로 석유원매사의 거래를 정지시킨 적이 있으나, 현실적인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한 달 만에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매사의 입찰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두 달 후에는 상사를 통한 우회납입을 인정하다가 결국은 원매사로부터의 직접조달을 전부 인정한 사례가 있음.

정유사에 대하여 무려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한전, 수협 등이 분기 단위로 석유를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올 하반기 물량을 원활히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됨.

이 점은 국방부가 이미 올해의 소요물량을 입찰

을 통해 확보한 후, 제한조치를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타 부처 및 기관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소지도 있음.

또한 정유사들은 공정위로부터 사상 초유의 과징금(1,211억원)을 부과받았고, 정유사 사장단이 국정감사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유사 임원들에 대한 검찰고발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볼 때 군납담합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정유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음.

이에 우리협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제4항)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현 국내 석유시장의 수급현황을 참작하시어 제한기간을 1개월로 경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임. ♣

2001. 6월 주요기관별 입찰예정 현황

대상	제품	시기	비고
한국전력	2.5%B-C/100 만 Bbl, LSWR/40 만 Bbl 연료유/1,100 만 Bbl	6월 1일 및 6월중순 6월말	3/4 분기 정기입찰
수협	경유, 중유, 휘발유/230 만 Bbl	6월 중순	3/4 분기 정기입찰
지역난방공사	보일러 등유/5만 Bbl	6월초	